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81호

2025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 공고

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고도화 지원 및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5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 테크노파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장비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

□ 사업내용

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활용 장비 수요에 기반한 신규 장비 구축및 기존 장비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

< 2025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공고 개요 >

| 지원기간 | 국비 지원한도 | 국비 비중 | 사업공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최대 18개월 |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| 50% 이내 | ′25.2.10′25.3.7. |

^{*}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'25년 국비 45억원

※ 지원규모는 선정 결과 및 수요조사 결과, 지역별 사업비 매칭 상황에 따라 조정

□ 지원유형 : 자유공모(제한경쟁)

□ 지원기간 : 사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8개월

□ 지원대상 : 비수도권 테크노파크*

*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

□ 사업비 구성 비율

| 국 비 |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총 사업비의 50% 이내 | 총 사업비의 50% 이상 | |

□ 지원내용

- (신규 장비 구입) 실증 및 분석, 시험·인증 등을 위한 공동활용 지원 장비 중 노후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장비 구입 비용 지원
- (장비 업그레이드) 기존 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그 레이드 및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워

□ 추진절차



* 선정평가 시 장비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병행

3. 평가기준

| 구 분 | 평가기준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관련 산업 및 기업 수요 분석의 적정성(10점) | | |
| 지원 필요성(35점) | 공동활용 장비 노후화 정도(15점) | | |
| | 장비활용 및 노후장비 개선 노력(10점) | | |
| | 추진목표 및 전략, 운영 계획의 적절성(10점) | | |
| 사업 계획의 적정성(30점) | 장비 구축 전략의 적정성(10점) | | |
| | 장비 구축 환경의 적절성(10점) | | |
| 사이스해 여랴/20전/ | 공동활용 장비 지원 실적(15점) | | |
| 사업수행 역량(20점) | 장비운영 전문인력의 적절성(5점) | | |
| 사업비 적정성 및 | 사업비 구성 및 자립화 계획의 적정성(5점) | | |
| 기대효과(15점) | 기대효과(10점) | | |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공고기간 : 2025. 2. 10.(월) ~ 2025. 3. 7.(금)

○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025. 3. 7.(금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온라인 접수 시 일체 업로드)
- 온라인 접수처 : http://www.smtech.go.kr
 - *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[접수처 홈페이지] 참조
 - * <u>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</u> 요망(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)
 - 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신청서(양식) 교부 : 사업계획서 양식, 장비도입심의 요청서, 제출 서류 등은 온라인 접수처(http://www.smtech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: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
 - *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
 - *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| 5. | 지 | 원저 | 의 | 대상 |
|----|---|----|---|----|
|----|---|----|---|----|

| 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 |
|---|
| 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제59조 제3항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|
| □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|
| 6. 유의사항 |
| □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 * RCMS :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www.rcms.go.kr) |
| □ 구축 장비의 다수(소형 부품·모듈 및 소형 장비 등)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|
| □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3조(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)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|
| |

논문저자 표시 등"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

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
7. 관련 법령

*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

□ 지원근거

○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14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
□ 관련규정

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-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
- ㅇ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8.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지역혁신정책과) | 시행계획 공고 | 044-204-7581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지역특화사업실) | 신청·접수, 사업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044-300-0829 |